

2001. 12.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 철회 건의문

위의 건의문을 지방자치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의원서명서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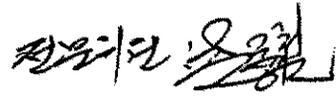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 철회 건의문 1 부

발의자 : 최상귀 의원
외 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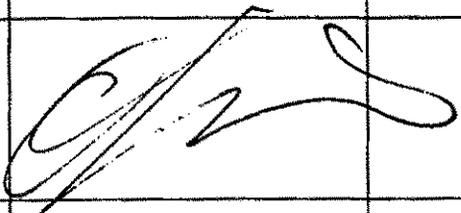


(찬성자 서명 별첨)

인	결	의	장	장	부
2001.12.22	제천시	의	장	부	부
처리과	사무	의	장	부	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 철회 건의문(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최 오 국		
부 세 덕		
임 경 완		
이 재 환		
김 병 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철회건의문(안)

의안번호	745
------	-----

발의연월일 : 2001. 12.
발의자 : 최상귀의원의외 4인

1. 제안이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철회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이 조성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현행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15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은 결국 수도권 난개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수도권인구집중, 교통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비수도권의 지방경제를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산업구조를 왜곡하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토 균형개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함은 물론 신선한 “국민의 정부”이념과 이미지에도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그 법령의 기본취지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소망임.

인구집중완화 및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수도권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 철회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산업자원부장관님) !

"21세기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심으로써 국민에게 희망과 국운 재도약의 큰 틀을 심어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새로운 국토관리기법과 제도로써 지방중심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큰 기쁨 속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정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집요한 요구에 밀려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공장 설립절차의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허탈과 함께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은 결국 수도권 난개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수도권인구집중, 교통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비수도권의 지방경제를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산업구조를 왜곡하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토 균형개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함은 물론 신선한 "국민의 정부"이념과 이미지에도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그 법령의 기본취지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더욱이 지난해에 서울행정법원은 국토의 균형개발 관련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수단이 적법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도 있기에, 인구집중완화 및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수도권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철회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이 조성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현행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15만 제천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12월 24일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